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장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92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1일
발 의 자 : 문장길 의원 (1명)
찬 성 자 : 이영실, 김혜련, 오현정, 김용연,
김용석, 채인묵, 김기대, 정재웅,
문병훈, 장상기, 김희걸, 김기덕,
이세열, 이광호, 신정호, 경만선
의원(16명)

1. 제안이유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발전해 왔음에 따라 이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을 예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인들 및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3조)

라. 시장이 지원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명시함. (안 제4조)

마.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장제비 지급 등을 명시함 (안 제5조, 안 제6조)

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를 명시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 ②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의 생활지원금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③ 그 밖에 생활안정금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장제비 지급) ①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장제비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용 발생
 - 안 제4조(지원사업) “각 호에 관한 지원 사항”
 - 안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제1항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6조(장제비 지급) 제1항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2,880명은 2000~2007년 사이에 결정된 사안으로 현재는 주소지 변동에 따른 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상자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인원은 추계기간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사례를 준용하여 593명으로 가정

- 서울특별시 : 민주화운동 관련자 2,880명 중 대상자 593명 지원(20.6%)
- ※ 광주광역시 : 민주화운동 관련자 777명 중 대상자 160명 지원(20.6%)
-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사례를 준용하여 29명으로 가정
- 서울특별시 : 민주화운동 관련자 2,880명 중 대상자 29명 지원(1%)
- ※ 광주광역시 : 민주화운동 관련자 777명 중 대상자 8명 지원(1%)
- 서울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은 체육시설 연 2회, 과학관 연 1회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3,873,200천원(5년간)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공공시설 이용료	-17,280	-17,280	-17,280	-17,280	-17,280	-86,400
	소계(a)	-17,280	-17,280	-17,280	-17,280	-17,280	-86,400
세출	심신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25,400	25,400	25,400	25,400	25,400	127,000
	생활지원금	711,600	711,600	711,600	711,600	711,600	3,558,000
	장제비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145,000
	소계(b)	766,000	766,000	766,000	766,000	766,000	3,830,000
□ 총 비용(b-a)		783,280	783,280	783,280	783,280	783,280	3,916,4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여차민

주무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심신 치유 프로그램 운영)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2. 세부추계내역

가. 5년간 비용 ≍ 3,916,400천원

- 연간비용 ≍ 783,280천원

나. 심신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 127,000천원

- 5년간 심신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 ~ 2024년)

- 연간비용 ≍ 25,400천원

· 심신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 25,400천원 × 1개소 = 25,400천원

※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준용(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

25,400천원 × 2개소 = 50,800천원

다. 생활지원금 ≍ 3,558,000천원

- 5년간 생활지원금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 ~ 2024년)

- 연간비용 ≍ 711,600천원

· 생활지원금 : 100천원 × 12개월 × 593명 = 711,600천원

※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예산 준용

: 100천원 × 12개월 × 160명 = 192,000천원

라. 장제비 ≙ 145,000천원

○ 5년간 장제비 = $\sum_{i=1}^5(\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 ~ 2024년)

- 연간비용 ≙ 29,000천원

· 장제비 : 1,000천원 × 29명 = 29,000천원

※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예산 준용

: 1,000천원 × 8명 = 8,000천원

마.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86,400천원

○ 5년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sum_{i=1}^5(\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 ~ 2024년)

- 연간비용 ≙ 17,280천원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액(체육시설 연 2회 + 과학관 연 1회) × 민주화운동 관련자 = 6천원 × 2,880명 = 17,280천원

※ 체육시설 사용료는 100분의 50 감액하고, 과학관 관람료는 면제

[참고]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예산(2019년)

부서: 인권영합협력관
 정책: 민주인권도시추진
 단위: 민주인권·광화도시 육성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원제강결기여자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	90,000		
○ 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금지원	200,000		
10.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0	100,000
○시민대학운영	100,000		